

학생안전보험 규정

- 제정 : 1995. 9. 1.
- 개정 : 2013. 10. 29.
-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15. 5. 13.
- 개정 : 2012. 6. 29.
- 개정 : 2018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재학 중인 학생이 공상으로 치료를 요할 때 가입된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비를 청구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관장) 이 보험에 관한 사무는 학생복지과에서 관장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공상이라 함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수업 중 입은 부상
2.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행사 중 입은 부상
3. 그 외 총장이 승인한 일의 시행도중 입은 부상.(다만, 공상의 원인이 학생의 직접적인 과실로 인한 것과 공식행사 중에 입은 부상이라도 그 행사에 무관한 것은 예외로 한다.)

제4조(수혜의 자격) 본교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며, 본교 학적이 변동(휴학, 자퇴, 제적, 퇴학)된 자는 보험료 수혜 자격도 상실된다.(단, 휴학 중인 자는 복학 후 수혜자격이 부여된다.)

제5조 삭제

제6조 ① 삭제

② 삭제

제7조 삭제

1. 삭제
2. 삭제
3. 삭제

제8조 삭제

제9조(보험료청구 및 지급) ①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청구는 학생복지과에서 접수받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한다.

- ② 보험금액은 해당 보험회사와 계약된 보험계약 약관대로 처리하여 지급한다.
- ③ 보험청구 기간은 보험계약 약관에 준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